

大田直轄市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2. 6. 24.

內 務 委 員 會

## 目 次

I. 審 查 經 過	-----	2
II. 提 案 說 明 要 旨	-----	3
III. 專 門 委 員 檢 討 要 旨	-----	6
IV. 修 正 案	-----	9
V. 質 疑  및 答 辯 要 旨	-----	13
VI. 檢 討 要 旨	-----	14
VII. 審 查 結 果	-----	14
VIII. 修 正 案 的 要 旨	-----	15
IX. 其 他 必 要 的 事 項	-----	15

大田直轄市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2年 6月 24日  
內 務 委 員 會

I .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1年 12月 6日 大田直轄市長
- 나. 回 附 日 字 : 1991年 12月 6日
- 다. 上 程 日 字 :
-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第6次 內務委員會(91. 12. 23)  
上程, 審議, 留保
  -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第7次 內務委員會 (91. 12. 26)  
上程, 審議, 留保
  - 第8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3次 內務委員會 (92. 1. 23)  
上程, 審議, 留保
  -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2次 內務委員會 (92.4.8~4.9)  
上程, 審議, 留保

- 第11回 大田直轄市 議會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92. 6. 16)  
修正案 上程, 審議, 留保
- 第11回 大田直轄市 議會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92. 6. 16)  
原案 審議, 留保, 小委員會 構成
- 小委員會 開催 (92. 6. 16)  
條例案 審議
- 第11回 大田直轄市 議會 (臨時會)  
第4次 內務委員會 (92. 6. 23)  
審議, 修正, 議決

## Ⅱ. 提案 說明 要旨(提案說明者 : 企劃擔當官)

### 1. 提案理由

本 條例는 大田開發公社의 設立과 運營에 關한 規程을 定함에 있어 公社의 資本金 및 株式, 組織과 業務, 財務會計等에 關한 事項을 規定하는 데 目的을 두고 있음.

### 2. 主要骨子(7章, 本文第41條, 附則第4條로 構成)

#### 가. 第 1 章 總 則

- 公社의 性格은 法人으로 함. (案 第 2條)
- 公社의 資本金은 授權資本金 30億원, 設立資本金은 授權資本金의 1/4以上으로 함 (案 第 4條)
- 公社의 株式發行은 記名式 普通株로 하고 1株券의 金額은 5,000원으로 하고 總 發行 株式은 60萬株로 함(案 第5條)

나. 第 2 章 任員 및 職員

- 社長은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大田直轄市長이 任免함 (案 第10條 第2項)
- 理事 및 監査는 大田直轄市長의 承認을 얻어 社長이 任免함. (案 第10條 第3項)
- 社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 監査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各各 1회에 限하여 連任할 수 있도록 함 (案 第11條)
- 公社의 重要한 事項을 審議· 議決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두도록 함 (案 第17條)

다. 第 3 章 業務

- 公社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業務를 行할 수 있도록 함. (案 第19條)
  - ① 建設資材 生産 및 販賣
  - ② 駐車場 管理 事業
  - ③ 淸掃 衛生 事業
  - ④ 都市 및 地域開發 關聯 事業
  - ⑤ 河川 關聯 事業
  - ⑥ 其他 自治團體가 委託하는 事業
- 經營評價는 大田直轄市長이 年1回以上 評價하도록 함. (案 第 22條)

라. 第 4 章 財務 會計

- 公社의 事業年度는 一般會計에 準하도록 함 (案 第23條)
- 公社는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를 年度 開始 1月前에 大田直轄市長에게 提出, 承認을 얻도록 함. (案 第24條)
- 公社는 決算結果 利益이 생긴 때에는 다음 順序에 따라 處理하도록 함. (案 第27條)
  - ① 移越 缺損金의 補填

- ② 株主에 대한 利益 配當
- ③ 事業 準備金의 積立

마. 第 5 章 起 債

- 公社는 大田直轄市長의 承認을 얻어 社債를 發行하거나 外國 借款을 導入할 수 있도록 함. (案 第33條 第1項)
- 社債의 總額은 資本金의 2倍를 超過하지 못하게 함. (案 第33條 第2項)

바. 第 6 章 監 督

- 大田直轄市長은 公社의 業務를 監督하도록 함. (案 第35條 第1項)
- 公社는 다음 事項에 대하여는 大田直轄市長의 承認을 얻어야 함 (案 第35條 第2項)
  - ① 機構 및 定員에 關한 事項
  - ② 任員 및 職員의 給與 및 退職手當 支給基準에 關한 事項 (이 경우 長官의 事前承認 要)
  - ③ 人事規程, 財産의 管理處分에 關한 規程 等

사. 第 7 章 補 則

- 大田直轄市 以外의 者가 出資한 경우에는 이 條例에 規程한 것을 除外하고는 商法中 株式會社에 關한 規程을 準用하도록 함. (案 第37條)
- 大田直轄市長은 必要한 경우 公社定員의 1/10 範圍內에서 公務員을 派遣할 수 있도록 함. (案 第39條)

아. 附 則

- 公社의 最初의 業務年度는 公社 設立日로부터 그 해 12월 31日까지로 함. (附則 案 第2條)
- 公社 設立時 直轄市의 出資額은 15億 7千萬원으로 하고 必要時 增資할 수 있도록 함. (附則 案 第3條)

- 公社가 設立될 때까지 公社設立에 必要한 經費는 直轄市 一般會計에서 支出하도록 함. (附則 案 第4條)

### Ⅲ. 專門委員 檢討 要旨(專門委員 : 安鍾贊)

本 條例案은 EXPO'93을 앞두고 地域開發事業의 財政需要가 擴大됨에 이를 解決하고 自治團體의 財政負擔을 輕減하여 地域經濟 活性化와 均衡發展에 이바지하고자 地方自治法 第138條 및 地方公企業法 第49條에 根據를 두고 地方公社인(假稱)大田開發公社의 設立과 運營에 關한 事項을 制定하는 것으로써

- 첫째 : · 公社의 性格은 法人으로 하고(案 第 2條)  
· 資本金은 30億원 設立資本金은 授權資本金의 1/4以上으로 하였으며(案 第 4條)
- 둘째 : 柱式의 發行은 記名式 普通株로 하고 1株券의 金額은 5,000원 總發行 柱式은 60萬株로 함. (案 第5條)
- 셋째 : · 任員中 社長은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大田直轄市長이 任免하고 理事와 監査는 直轄市長의 承認을 얻어 社長이 任免토록 하였으며 (案 第10條 第 2項)  
· 社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 監査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各 1회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도록 함. (案 第11條)  
이는 地方公企業法 第 49條 3項과 第 59條 1項의 規定에 의한 規定으로 思料됨.
- 넷째 : 公社의 業務로는 建設資材生産販賣, 河川開發, 都市 및 地域開發 關聯事業等 公益性和 收益性 事業을 할 수 있도록

록 하는 것으로 地方公企業法 第 2條 및 施行令 第 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이나 建設資材生産販賣는 議會 議決을 要하는 事項이 되겠음. (案 第19條)

- 다섯째 : · 公社의 財務會計는 一般會計에 準하도록 하고 (案 第23條)
  - 事業計劃 및 豫算書는 市長의 承認을 얻어 施行토록 하였으며 (案 第24條)
  - 損益金의 처리는 移越缺損金 補填, 利益配當, 事業準備金의 順으로 積立토록 함. (案 第27條)
- 여섯째 : 社債는 資本金의 2倍를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直轄市長의 承認을 얻어 社債를 發行하거나 外國 借款을 導入할 수 있도록 하고 (案 第33條 第1,2項)
- 일곱째 : · 大田直轄市長은 公社를 監督하도록 하고 (案 第35條 第 1項)
  - 機構 및 定員과 人事, 財産의 管理處分은 市長의 承認事項으로 規定하고 任員 및 職員의 給與, 手當 支給基準은 長官의 事前 承認을 得하여 施行토록 함. (案 第35條 第2項)
- 여덟번째 : · 補則으로 大田直轄市以外의 者가 出資한 경우에는 本 條例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商法中 株式會社에 關한 規定을 準用토록 하고(案 第37條)
  - · 直轄市長은 必要하다고 認定될 경우 公社定員의 1/10範圍內에서 公務員을 派遣할 수 있도록 한 바 地方公務員法上 抵觸되지 않는다고 思料됨. (案 第 39條)
- 아홉번째 : · 公社의 最初 事業年度는 公社設立日로부터 그해 12月 31日까지로 하고 (附則 案 第 2條)

- ・ 公社設立時 直轄市の 出資金은 15億 7千萬원으로 하고 必要時 増資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附則 案 第 3條)
- ・ 公社設立時 必要한 經費는 直轄市 一般會計에서 支出토록 規定되었습니다. (附則 案 第 4條)

本 案件의 內容으로 볼때 '92年度 一般會計 豫算案에 의하면 出資金 16億원이 計上되어 있어 附則에 의한 設立時 出資金 15億 7千萬원과 는 相違되는 바 相互 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되며, 本 案件의 設立根據가 되는 地方公企業法 및 地方財政法에 抵觸되지 않는 條例案 으로 目的과 그 事業이 地方自治團體의 財政運營上 매우 바람직한 案이 된다고 思料됨.

IV. 大田直轄市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에 대한修正案

審 查 報 告

1992年 6月 24日

內 務 委 員 會

1.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2年 6月 3日, 大田直轄市長

나. 回 附 日 字 : 1992年 6月 5日

다. 上 程 日 字 : • 第11回 大田直轄市 議會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92. 6. 16)

上程, 審議, 留保

• 第11回 大田直轄市 (臨時會)

第4次 內務委員會 (92. 6. 23)

審議, 議決

2. 提案 說明 要旨 (提案說明者 : 豫算擔當官)

가. 修 正 理 由

既 議會에 提出된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 內容  
中 法律用語醇化에 適合하지 않은 一部 字句를 修正하고 地方公  
企業法에 根據하여 公社 設立에 必要한 事項을 新設하였으며 未  
備한 一部 條文 內容을 修正 運用되도록 하려는 것임.

나. 修正 主要 骨子

1) 一部 字句 修正

- 法律用語醇化에 適合하지 못한 24個 字句를 修正 補完함.  
(別添)

2) 條文 新設

- 業務上 餘裕金을 國債, 地方債 取得과 金融 機關에 預入 外에는 使用하지 못하도록 規定함. (案 第35條)
- 給與 및 退職手當의 支給基準을 定하여 直轄市長의 承認을 받고 直轄市長은 長官의 承認을 얻도록 함.  
(案 第36條)

3) 一部 修正

- 條例 第2章 第19條(事業業務)1號 建設資材 生産 및 販賣 事業中 세멘트 加工事業, 레미콘 및 아스콘 事業은 除外 하며
- 條例(案) 第27條(損益金の 處理)1項2號에 資本金의 缺損 補填을 위하여 “法定準備金の 積立”을 規定하였고
- 附則 第 2條(權利業務承繼)에 既存會社를 解散하고 公社를 設立할 경우 해산된 會社의 權利承繼規定을 定함.

4) 削除 條文

- 最初の 事業年度에 대한 經過措置 公社의 最初の 事業年度는 案 第 23條 規程에 불구하고 公社의 設立日로부터 그해 12月 31日까지로 한다는 削除함. (案 附則 第2條)

### 3. 專門委員 檢討 要旨 (專門委員 : 李 永 周)

本 案件은 지난 '91年 12月 6日 第7回 定期會議時 提出되어 審議 留保되어온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에 대한 修正案으로써 本 條例 案內容中 不適合한 用語와 一部字句를 修正하는 것이며 必要한 條 項을 新設하는 한편 未備한 一部 條文內容을 修正하려는 事項임.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一部 字句를 修正하는 內容으로써 法律用語에 適合하지 않은 24個 字句를 醇化 補完하였음.

둘째, 條文을 新設하는 것으로써 業務上 餘裕金을 國債, 地方債 取得과 金融 機關에 예입하는 외에는 使用하지 못하도록 하는 內容의 餘裕金 運用 條項(第35條)을 新設하였음.

또한, 任職員과 職員에 대한 給與 및 退職手當의 支給 基準을 정하여 市長의 承認을 받도록 하는 條項(第36條)을 新設하였음.

셋째, 條項 一部를 修正하는 內容으로써 案 第19條 事業 業務 第 1號의 建設 資材 生産 및 販賣 事業中 “시멘트 가공업과 레미 콘 및 아스콘 事業”을 除外하였으며 案 第 27條 損益金의 處理 第1項 2號에 資本金 損失 保全을 위한 “法定 準備金의 積立”을

새로이 規程하였고, 또한 附則 第2條 事業年度에 대한 經過 措置를 削除하는 한편 同條에 權利義務 承繼 事項을 새로이 新設하였음.

本 修正案 內容을 살펴보면 그간 公社의 對象 事業으로 누차 거론되었던 案 第 19條의 建設 資材 生産 및 販賣에 있어서 시멘트 가공사업과 레미콘 및 아스콘 生産”을 除外한 것은 우리지역 中小 企業 保護 育成 側面에서 當然한 措置라 볼 수 있겠으며, 案 第 27條의 餘裕金 運用에 있어서는 公社의 餘裕資金을 國債, 地方債의 取得과 金融機關에 預入하는것외에는 달리 運用하지 못하도록 制限하였음은 效率的인 資金管理面에서 필요한 制限 根據 마련이라 判斷됨.

그 동안의 審議 課程에서 나타난 몇가지 問題點이 修正된 것은 肯定的인 補完 事項이라 思料됨.

## V. 質疑 및 答辯 要旨

質 疑	答 辯
<p>○ 案 第 24條와 關聯</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事業計劃書의 市長 承認을 得하여야 하는 必要性, 與否.</li></ul> <p>○ 案 第33條와 關聯</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社債 發行時 議會 議決을 得하지 않아야 하는지</li><li>- 公社資本金 및 準備金의 規模와 準備金의 使用 目的</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地方公企業法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 承認을 得하여야 함.</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公企業法上 市長 管轄 事項으로 市長 이 長官의 承認을 得하면 됨.</li><li>- 資本金 : 30億원</li><li>- 準備金 : 規模는 豫測할 수 없고 廳舍 開院에 必要한 事務室 및 집 기 購入等에 所要됨.</li></ul>
<p>○ 案 第19條와 關聯</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本 公社의 業務가 地方公企業法 第2條에 規定된 事業範圍와 相異한 理由</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地方公企業法 施行令 第2條 2項에 根據를 둔 것으로 國民의 福利 增進에 기여하고 그 經費를 주로 事業 經營 收益으로 充當하는 事業으로써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는 事業으로 하였음.</li></ul>
<p>○ 案 第28條와 關聯</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公社가 施行하는 一部 事業에 대하여 地方自治團體가 一般 및 다른 特別會計에서 財政的 負擔을 하는 理由</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地方公企業法 第14條 1項에 의하여 負擔하는 事項임.</li></ul>

質 疑	答 辯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事業計劃과 豫算, 機構와 定員等 議會 議決을 받는 制度的 裝置 마련 與否</li> <li>○ 本 公社에 대한 議會의 監査權 與否</li> <li>○ 公社 設立後 稅制 惠澤등 關係 法規가 事後에 改正됨은 不當한 것 아닌지</li> <li>○ 開發委員會의 設置 根據와 性格</li> <li>○ 開發委員會의 出資는 特定人의 資金을 投資하는것 아닌지</li> <li>○ 開發公社 設立 留保와 關聯 市民 公청회 運轉한 新聞 보도의 진원은</li> <li>○ 公社 設置 條例案을 '91. 9. 作成後 12月 定期會時 提出한 理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地方公企業法上 市長 管轄 事項으로 不可함.</li> <li>- 大田直轄市 議會 行政 事務 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5條의 規定에 의거 本 大田開發公社는 監査 對象 機關임.</li> <li>- 內務部, 財務部와 緊密히 協助하여 세제 惠澤이 되도록 努力하겠음.</li> <li>- 內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私團法人 으로 地域 開發에 공헌하기 위한 團體 임.</li> <li>- 開發委員會의 基金은 特定 資金이 아니 고 뜻있는 市民의 基金임.</li> <li>- 알수없음</li> <li>- 條例 作成後 推進委員會의 諮問과 立法 豫告 期間, 市·道 企劃管理室長 會議 等 期日이 經過되었음.</li> </ul>

## VI. 討 論 要 旨 : 省 略

## VII. 審 査 結 果 : 修 正 案 議 決

## Ⅷ. 修正案의 要旨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2年 6月 23日 內務委員長

나. 修正理由 : 別添

다. 修正主要骨子 : 別添

Ⅸ.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 대전직할시 대전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2. 6. 23.

제안자 : 내무위원장

### 1. 제안 이유

대전 개발 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관련 조례안의 내용이 일부 불합리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근거마련이 미흡할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마련등 관련 조항이 전혀 삽입되지 않은것은 설립후 부실 운영이 우려되는 바, 문제시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건실한 공사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 골자

- 본 개발공사의 명칭인 “대전직할시 대전개발공사”를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로 명칭 변경
- 안 제4조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수정
- 안 제5조 2항의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보통주로 발행한다”를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보통주와 우선주로 발행한다”로 하고, 제5항의 주식의 총수 “60만주”를 “400만주”로 하였음.
- 안 제8조 2항에 “다만, 시장은 장관에게 인가 신청 하기전에 대전직할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단서 내용 삽입

- 안 제19조 3호의 청소위생사업에 “산업폐기물”을 포함하고 6호에 “공원사업”, 7호에 “지하도겸 상가 조성 사업”, 8호에 “도시가스사업”, 9호에 “과도사업”을 추가 사업업무로 포함하는 한편 6호를 “10호”로 함.
- 안 제33조 3항에 “다만, 시장이 보증하는 사채 및 차관에 대하여는 대전직할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단서 내용 삽입
- 안 제37조에 4항 “의회는 공사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와 제5항에 “제4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직할시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조항을 새로이 신설
- 안 “제41조”와 “제42조”를 삭제
- 안 부칙 제3조 “공사 설립 당시 직할시의 출자액 15억 7천만원”을 “50억원”으로 수정

대전직할시 대전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직할시 대전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중 “대전개발공사”를 “한밭개발공사”로 한다.
- 안 제4조중 “30억원”을 “200억원”으로 한다.
- 안 제5조 제2항중 “보통주”를 “보통주와 우선주”로 하고, 제5항중 “60만주”를 “400만주”로 한다.
- 안 제 8조 제2항에 “다만, 시장은 장관에게 인가 신청하기전에 대전직할시 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단서로 삽입한다.
- 안 제 19조중 제3호 “청소위생사업”에 “산업폐기물”을 포함하고 제5호 다음에 “제6호 공원사업”, “제7호 지하도점 상가 조성 사업” “제8호 도시가스 사업” “제9호 궤도사업”을 새로이 신설하며, 6호를 “10호”로 한다.
- 안 제33조 제3항에 “다만, 시장이 보증하는 사채 및 차관에 대하여는 대전직할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를 단서로 삽입한다.
- 안 제37조에 제3항 다음에 제4항을 신설하여 “의회는 공사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수 있다”와 제5항을 신설하여 “제4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직할시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삽입한다.
- 안 “제41조”와 “제42조”를 삭제한다.
- 안 “제43조”를 “제41조”로 한다.
- 안 부칙 제3조중 “15억 7천만원”을 “50억원”으로 한다.

수 정 안	수 정 동 의 안
<p>대전직할시 <u>대전개발공사</u> 설치조례수정(안)</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38조 및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 직할시 <u>대전개발공사</u>(이하"공사"라 한다)를 설치함으로써 건설자재생산 및 주차장관리, 청소위생사업 등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 (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u>30억원</u>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정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5조 (주식의 발행등) ① (생략)</p> <p>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u>보통주</u>로 발행한다.</p> <p>③ (생략)</p> <p>④ (생략)</p> <p>⑤ <u>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총수는 60만주</u>로 한다.</p> <p>⑥ (생략)</p> <p>제8조 (정관) ①(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대전직할시 <u>한밭개발공사</u> 설치조례수정(안)</p> <p>제1조 (목적) .....</p> <p>..... <u>한밭개발공사</u> .....</p> <p>.....</p> <p>제4조 (자본금) ①.....</p> <p><u>200억원</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 (주식의 발행등) ①(현행과 같음)</p> <p>②.....</p> <p>.. <u>보통주와 우선주</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총수는 400만주</u>로 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p>제8조(정관)</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수 정 안	수 정 동 의 안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생략)	8. (현행과 같음)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p>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u>직할시장의 승인을 거쳐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u></p>	<p>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u>직할시장의 승인을 거쳐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장관에게 인가신청하기 전에 대전직할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19조(사업업무)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 (세멘트가공 사업 레미콘, 아스콘은 제외)</li> <li>2. 주차장 관리 사업</li> <li>3. <u>청소 위생 사업</u></li> <li>4. 도시개발및 지역관련 사업</li> </ol>	<p>제19조(사업업무)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u>청소 위생 사업(산업 폐기물 포함)</u></li> <li>4. (현행과 같음)</li> </ol>

수 정 안	수 정 동 의 안
<p>5. 하천 관련 사업</p> <p>6. 기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 단체가 위탁하는 사업</p> <p>제33조 (사채발행및 차관) ①(생략)</p> <p>②(생략)</p> <p>③직할시장은 사채및 차관의 상환을 보 증할 수 있다.</p> <p>④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37조 (감독) ①(생략)</p> <p>②(생략)</p> <p>1.(생략)</p> <p>2.(생략)</p> <p>3.(생략)</p> <p>③(생략)</p>	<p>5. (현행과 같음)</p> <p>6. 공원 사업</p> <p>7. 지하도겸 상가 조성 사업</p> <p>8. 도시 가스 사업</p> <p>9. 궤도 사업</p> <p>10. 기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 단체가 위탁하는 사업</p> <p>제33조(사채발행및 차관) ①(현행과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③직할시장은 사채및 차관의 상환을 보 증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증하는 사채및 차관에 대하여는 대전직할시 보 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④(현행과 같음)</p> <p>제37조 (감독) 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1.(현행과 같음)</p> <p>2.(현행과 같음)</p> <p>3.(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p>④의회는 공사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p> <p>⑤제4항에 대한 감사및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직할시의회 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수 정 안	수 정 동 의 안
<p>제41조 (공무원파견) 직할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p>	<p>제41조 (공무원파견) (삭제)</p>
<p>제42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p>	<p>제42조 (파견공무원의 인사 평정·관리) (삭제)</p>
<p>제43조 (시행규칙)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4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3조 (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설립당시 직할시의 출자액은 15억7천만원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자할 수 있다.</p>	<p>제3조 (설립시의 출자액) ----- -----50억원----- ----- -----</p>